서울특별시 공유재산에 대한
용산주거안심종합센터 사용료 면제 동의안

의 안 번 호	3592

제출년월일 : 2026년 3월 30일
제 출 자 : 서 울 특 별 시 장

1. 제안이유

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제24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5항제3호에 의거, 「지방공기업법」에 따른 지방공사인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가 비영리사업인 '용산주거안심종합센터'를 운영하는 경우로 사용료 면제를 추진하고자 시의회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가. 사용료 면제 공유재산 현황

○ 소 재 지 : 용산구 한강로 2가 429외 1필지 호반써밋에이디션 611호, 612호, 613호

○ 사 용 자 :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

○ 사용허가 면적 : 토지 35.4215㎡, 건물 연면적 521.5901㎡

○ 사용허가 기간 : 2026.5.11. ~ 2031.5.10.(5년)

○ 예상 감면액 : 271,690천원(월 4,528천원) ※ 1차년도 : 54,338천원

나.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필요성

○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의 설립 목적인 시민 주거 생활 안정 및 복지 향상에 초점을 맞춰 흩어져 있는 주거복지 서비스를 SH에서 통합하여 원스톱으로 제공할 수 있는 주거안심종합센터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.

○ 주거안심종합센터 사업은 SH의 비영리 사업으로 서울시 주거복지센터 운영 사무를 포함하여 수행하고 있으며 관련 법령상 사용료 면제 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므로 사용료 면제가 타당함.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○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(사용료의 감면) 제1항 제4호

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22조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.

4. 재난을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허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

○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7조(사용료 감면) 제5항 제3호

⑤ 법 제24조제1항제4호에서 "재난을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허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"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.

3.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의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　　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　　타

○ 2026년 제2차 공유재산심의회 심의('26.3.12.)

- 심의근거 :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제16조제2항
- 심의결과 : '조건부 적정'

〈조건사항〉 시의회 동의 절차를 거쳐 사용료 감면을 추진할 것

※ 작성자 : 주택정책과 주택정책협력팀 남은주 (☎2133-7982)